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피명령 시 대피방법 안내 의무 신설〉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60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승원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9. 15.
3. 회부연월일 : 2025. 9.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대피 명령 시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함께하도록 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하 “시·군·구청장 등”이라 한다)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지역 안의 주민 등이 대피하도록 발령하는 대피명령을 행할 때, 대피방법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40조(대피명령) ① ----- ----- ----- ----- ----- ----- ----- ----- ----- ----- ----- ----- ----- ----- ----- <u>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피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 등에 의해 시의적절한 대피명령이 발령된다면 해당 지역 내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대피명령의 발령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도, 대피명령 발령 시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 외에는 대피방법 등 대피명령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대피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규율은 미비한 상황임.

이로 인해 대피명령 시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해당 지역 내의 주민 등이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안내·긴급·위급문자를 위험도에 맞게 구분 발송하고, 문안도 ‘언제·어디로·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는 등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개선 대책과 유사한 맥락에서 현행법에 따른 대피명령 발령 시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피방법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 주민 등의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대피명령 시 대피방법 등에 대해 같이 안내하여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피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